

■ 공연법 시행규칙 [별표 1의3] <개정 2023. 11. 1.>

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(제6조의9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써 그에 해당하는 각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합산한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. 이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.

- 1) 위반행위가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
- 2) 위반행위가 단순착오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<br>법조문       |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1회 위반       | 2회 위반       | 3회 위반       | 4회 이상<br>위반 |
| 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   | 법 제12조의6 제1항제1호 | 지정 취소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나. 업무정지 기간 중에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2조의6 제1항제2호 | 지정 취소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다.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12조의6 제1항제3호 | 업무정지<br>1개월 | 업무정지<br>3개월 | 업무정지<br>6개월 | 지정 취소       |
| 라.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| 법 제12조의6 제1항제4호 | 업무정지<br>1개월 | 업무정지<br>3개월 | 업무정지<br>6개월 | 지정 취소       |